

공익재단법인 한살림재단 정관

2015. 8. 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공익재단법인 한살림재단”(약칭 ‘한살림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역살림 및 지역복지 활동,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생태농업 연구·보급, 생명문화 및 생태보전 활동 등에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과 사회 일반의 공익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6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2. 지역살림, 마을공동체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경영 실현을 위한 연구·공익사업
3. 국내 영세 소농 및 제3세계 가족소농의 농업자립에 필요한 공익사업
4.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과 지역공동체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공익사업
5. 지역 생명문화 및 생태보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6. 농적 가치 중심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공익사업
7. 생산현장 맞춤형 생태농업기술 연구·보급에 필요한 공익사업
8.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과 특정 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의 조성 및 지원사업
9.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

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재원)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 2호의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6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9조(상임이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임원취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제22조(이사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3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의 성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6조 (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상근 임.직원) ①이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 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②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의 사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30조(이사회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할 때
-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

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이사회 개의와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⑤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5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 제36조(사무국) ①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 제37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수익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8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44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경기도 내에서 발행되는 경기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

제4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이재화	-	2년
이사	김영동	-	2년
	김찬모	-	2년
	박혜숙	-	2년
	이호열	-	2년
	정지연	-	2년
	하선주	-	2년
	허헌중	-	2년
감사	김종욱	-	2년
	최성호	-	2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정관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